

▶ 특별공급 청약요건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용인시 및 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해당타입</th> </tr> </thead> <tbody> <tr> <td>전용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84A·B㎡</td> </tr> <tr> <td>전용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84A·B㎡</td> </tr> <tr> <td>전용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84A·B㎡ / 123㎡</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84A·B㎡ / 123㎡</td> </tr> </tbody>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용인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해당타입	전용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4A·B㎡	전용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84A·B㎡	전용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4A·B㎡ / 123㎡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용인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해당타입																									
전용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4A·B㎡																									
전용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84A·B㎡																									
전용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4A·B㎡ / 123㎡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84A·B㎡ / 123㎡																									
특별공급 별 자격요건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주택소유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 노부모부양																											
	청약자격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태아, 입양 포함)	- 혼인기간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2년 이내 출생)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구성원 전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2년 이내 출생)	- 무주택 세대주 - 만 65세 이상 -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 일반공급 청약 CHECK POINT

CHECK POINT 1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청약가능

CHECK POINT 2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가능

(용인시 또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CHECK POINT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CHECK POINT 4

유주택자
1순위
청약가능

CHECK POINT 5

재당첨제한
無

CHECK POINT 6

배우자 중복 청약 가능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가능.
단, 특별공급은 청약일시에 따라
당첨여부 상이할 수 있음)

▶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용인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해당타입
전용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4A·B㎡
전용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84A·B㎡
전용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4A·B㎡ / 123㎡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84A·B㎡ / 123㎡

▶ 일반공급 청약자격

구분	순위별 조건	
	청약자격	
1순위	전용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 85㎡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 또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